그룹 공시 정보 관리 규정

2025. 2. 4.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각 법률의 시행령, 감독규정과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해외 증권거래소 상장 관련 법령(이하 “공시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을 총칭하여 "그룹"이라 하고, 그룹에 속하는 각 회사를 “그룹사”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공시정보 관리 기준 및 공시 업무 수행 절차 등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지주회사의 공시 정보 관리 및 공시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공시관련법규 또는 지주회사 정관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각 그룹사는 이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 및 규칙 등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공시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시정보”라 함은 그룹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라 한다),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이하 ‘SEC’라 한다) 및 New York Stock Exchange(이하 “NYSE”라 한다”)규정 등 공시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2. “공시서류”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신고 및 보고서류(전자문서 포함)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말한다.
3. “공시통제”라 함은 모든 공시 정보를 정확성, 완전성, 유효성, 적시성의 기준하에 적법하게 공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룹 내부의 관련 조직에서 일정한 통제절차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모든 업무활동을 말한다.
4. “공시통제조직”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해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지주회사 공시책임자, 지주회사 공시위원회, 지주회사 공시담당부서, 공시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지주회사 공시소관부서, 자회사 공시책임자, 자회사 공시담당부서를 의미한다.
5. “공시위원회”라 함은 지주회사의 공시업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8조에 근거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6. 국내공시”라 함은 자본시장법, 발행공시규정,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등에 의해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등의 국내기관을 제출처로 하거나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지주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시를 말한다.
7. 해외공시”라 함은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이하 “미국증권거래법”이라 한다.)등에 의해 SEC 및 NYSE 등의 해외기관을 제출처로 하는 공시를 말한다.
8. “지주회사 공시책임자”라 함은 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지주회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9. “지주회사 공시담당부서”라 함은 지주회사의 업무 및 직제 규정에 의거 공시업무 오류 및 누락 예방을 위한 통제 역할과 공시정보 취합 및 실제 공시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하며, “공시통제업무부서”라 함은 규정 제9조 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지주회사 공시책임자가 지정한 지주회사 공시통제업무를 수행하는 지주회사 공시담당부

서를 말한다.

10. “지주회사 공시소관부서” 라 함은 실제 공시정보의 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지주회사의 각 부서를 말한다.
11. “자회사”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회사를 말하며, “종속회사”란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종속회사를 말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경영공시를 위한 자회사에 대한 정의는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2. “주요자회사”라 함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공시 대상 자회사를 말한다.
13. “자회사 공시책임자”라 함은 제11조에 의거 자회사 및 소속 종속회사에서 발생한 지주회사 공시 정보 관리 및 보고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4. “자회사 공시담당부서”는 자회사 및 소속 종속회사에서 발생한 지주회사 공시 정보 관리와 지주회사 공시담당부서로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공시의 원칙)

지주회사는 투자자, 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공시정보를 적시에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선관주의의무)

그룹 임직원은 공시사항이 정해진 절차나 방법에 따라 공시되기 전에 대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여야 하며, 그룹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 정보 등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는 엄격히 금지한다.

제6조(공시의 구분)

공시는 국내외 제출기관에 따라 국내공시와 해외공시로 구분하며, 공시의 유형, 공시유형별 공시담당부서 및 공시소관부서, 공시기한, 작성내용 등은 그룹공시정보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시통제조직의 권한과 책임

제7조(지주회사 공시책임자)

①지주회사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주회사 공시정보 및 공시서류(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검토·승인·시행에 관한 업무
2. 임직원의 공시관련법규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관련 교육실시, 규칙의 마련 등)
3. 공시위험요인에 대한 식별과 대처방안 수립·실행
4.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5. 공시관련법규에서 공시하도록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시여부 및 범위의 결정
6. 공시담당부서의 지휘 및 감독
7.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시행을 위한 규칙 등의 승인
8. 기타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하여 지주회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주회사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공시사항과 관련된 각종 장부 및 기록에 대한 제출요구 및 열람권
2. 지주회사 법률, 회계 또는 감사담당부서, 외부전문가, 기타 공시정보 생성 및 공시서류 작성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임직원에 대한 의견 청취권
3. 기타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하여 지주회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공시책임자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 88 조 제 1 항에 의거 공시책임자로 한국거래소에 등록되어야 하며, 동조 제 2 항에 의거 지주회사의 신고 또는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거래소 공시담당자”라 한다)를 2 인 이상 지정하여 한국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공시위원회)

①지주회사는 지주회사 공시업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주회사 내에 공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주회사의 공시위원회 운영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지주회사 공시담당부서)

①지주회사 공시담당부서는 규칙에서 정한 공시업무별 공시 주관 및 공시를 실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지주회사 공시담당부서는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지주회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공시책임자는 제 3 호 내지 제 6 호를 전담(이하 "지주회사 공시통제업무")하는 부서를 별도 지정할 수 있다.

1.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2. 최종 공시서류의 작성 및 공시실행
3. 연간 공시업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현황 점검
4. 공시관련법규의 제·개정내용에 대한 수시 점검 및 내부 전파와 법규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검토 및 지주회사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5. 공시위험의 식별, 점검, 평가를 위한 공시위험모니터링 실행 및 관리
6. 공시통제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평가 실행 및 관리
7. 기타 지주회사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주회사 공시소관부서)

지주회사 공시소관부서는 지주회사에서 발생한 공시정보의 최초작성자 또는 통지자로서 지주회사 공시정보 제공의 누락이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책임 및 권한 등은 규칙에서 정한다.

제11조(자회사 공시책임자)

①자회사 공시책임자는 각 자회사에서 공시관련법규에서 정한 지주회사 공시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지주회사의 공시담당부서에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공시정보에 대한 공시위험모니터링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종속회사를 보유하여 중간지배회사의 역할을 하는 자회사의 경우 해당 종속회사에서 지주회사 공시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자회사 공시책임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회사 공시담당부서의 담당임원으로

한다.

제12조(자회사 공시담당부서)

지주회사 공시담당부서는 자회사 및 소속 종속회사에서 발생한 공시정보의 최초작성자 또는 지주회사 공시담당부서로의 통지자로서 공시정보 제공의 누락이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책임 및 권한 등은 규칙에서 정한다.

제3장 공시통제활동

제13조(정보의 수집·유지·관리)

각각의 공시통제조직은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관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되는 지주회사의 내·외부의 필요한 정보 및 근거자료를 수집·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공시문서의 작성 및 제출)

①지주회사의 모든 공시문서는 공시관련법규에서 정한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②지주회사 공시책임자는 작성된 공시문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공시위험모니터링)

①자회사 공시담당부서, 지주회사 각 공시소관부서, 지주회사 공시담당부서는 공시위험모니터링을 통해 지주회사 공시정보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공시통제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지주회사 공시담당부서는 공시위험모니터링을 위해 참고자료의 제출 요구, 공시정보와 관련된 직원과의 면담, 지주회사 법률 및 회계 또는 감사업무담당부서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시위험모니터링 결과를 지주회사 공시위원회 및 지주회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공시통제의 평가

제16조(평가시기)

지주회사 공시통제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사업보고서의 제출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제17조(평가절차)

①지주회사 각 공시소관부서 및 지주회사 공시담당부서는 부서별 운영현황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전조 제 2 항의 기간내에서 지주회사 공시책임자가 정하는 날까지 공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주회사 공시위원회는 지주회사 각 공시소관부서와 지주회사 공시담당부서가 제출한 운영현황을 근거로 지주회사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주회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평가결과의 활용)

①지주회사 대표이사와 지주회사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나타난 통제상의 취약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지주회사 공시책임자는 전항의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후에 점검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공시 통제

제19조(공시정보 관련 보도자료의 배포 등)

①공시정보와 관련하여 보도기관으로부터 취재요청이 있거나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 공시책임자가 이를 총괄한다. 그러나 공시대상

정보 이외의 사항인 경우에는 지주회사 홍보담당부서가 이를 총괄한다.
②보도자료의 배포 등에 있어 지주회사 홍보담당부서는 공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보제공범위 등에 관하여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주회사 공시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보도내용의 사후점검)

지주회사 홍보담당부서는 공시정보에 관한 보도자료의 배포후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지주회사 공시담당부서에게 통보하고 동시에 지주회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시장풍문)

①그룹사 및 그룹사 임직원은 시장풍문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주회사 공시책임자는 관련 부서 및 자회사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주회사 공시책임자는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2조(교육)

①지주회사 공시책임자는 지주회사 임직원 및 자회사 공시담당부서가 공시통제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주회사 공시책임자는 거래소공시담당자가 한국거래소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 일정 등을 파악하여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이 관련 지주회사 임직원 및 자회사 공시담당부서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3 조(위반시 조치사항)

①지주회사 공시책임자는 공시위험모니터링 및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결과, 공시통제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주회사 공시소관부서 또는 자회사 공시책임자로 하여금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주회사 공시소관부서 및 자회사 공시책임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본 규정 및 하위 규칙을 위반한 그룹 임직원의 처리는 그룹사의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제정 및 개폐)

이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전결권자는 지주회사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법령 및 내규의 개정 등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의 경우에는 지주회사 공시책임자가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위임)

지주회사 공시책임자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기타)

본 규정 및 하위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시 사항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및 그룹사에서 관련 법령 및 관련 내규에 따라 적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 2. 4 부터 시행하며,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지주회사의 '공시규정'은 폐지한다.